

청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750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한경민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18.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103,89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8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52789) 그 항소심에서 2019. 6. 3. 화해가 성립되었는데(대구고등법원 2019나21485), 당시 화해조항은 ‘C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7,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위 7,100만 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한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소유권자였는데, 위 1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 절차 진행 중인 2019. 3. 18.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D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9. 4. 30.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11. 30.경 경기가평경찰서에 피고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한 후 2022.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내지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52789 사건에서 2019. 2. 14. 원고에게 69,80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9. 3. 18.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충주시 E에 있는 2층 다세대주택 중 F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은 아니므로 C가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당연히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 즉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점은 위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C의 모든 적극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과 모든 소극재산의 가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및 그 가액을 알기 어려워서 C가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

별지